

2021.3.1.자

# 순창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제정 공고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2020.8.19.)에 따른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전라북도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동일기준 적용
  - 전보의 우선순위 신설
  - 일반전보 방법 신설
  - 시·도간 전보 교류기준 수정
  - 영양교사 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수정

### 2. 제정 항목 및 주요 내용

장	조항	조 명	주요 내용
1	1	목적	
	2	적용범위	순창군 배치 영양교사
	3	방침	관내 인사에 국한
2	4	임용대상	순창군 배치 영양교사
	5	임용지역	신규는 관내 교사보다 후순위
3	6	인사지역	순창군
	7	일반전보	동일교 2년이상 4년이상 근속자 대상 3교까지 희망, 전보서열부 우선 동일지역 6년 초과 불가
	8	서열부 작성 및 유효기간	
부칙	1	시행일(2021.3.1.)	
	2	기준 명기의 사항은 전북교육청인사관리기준을 따름	

2020년도

(2020.8.19.제정)

#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

- 초 · 중 · 고등학교 -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JEOLLABUKDOSUNCHANG OFFICE OF EDUCATION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영양교사가 안정된 위치에서 학생의 급식 교육 및 업무에 전념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 (방침)** 이 기준은 전라북도교육청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제3조(하급교육행정기관 인사관리)에 따라 교육지원청 관내 인사에 국한한다.

## 제 2 장 신규임용

**제4조 (임용대상)**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순창군에 배치한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임용지역)** 생활근거지 등을 참조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전보 교사와 경합이 될 때는 관내 교사에 우선할 수 없다.

## 제 3 장 교사 전보

**제6조 (인사지역)** 전라북도교육청 영양교사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순창군으로 한다.

**제7조 (일반전보)** ① 일반전보는 동일교에서 2년 이상 4년 이하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전보 학교는 3교까지 희망할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1개 또는 3개 학교 희망도 가능하다.

③ 2·3식 학교를 희망하는 교사는 경합이 안 될 경우 전보 서열순위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동일지역 근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서열부 작성 및 유효기간)** ① 영양교사의 전보서열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작성한 서열부를 활용하고 없을 경우 [별표 1]의 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전보서열 평정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근속호봉이 높은 교사, 생년월일이 빠른 교사 순으로 한다.

③ 전보서열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부 칙(2020. 8.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영양교사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1. 학교별 연간 근속경력 가산점

가. 학교별 연간 근속경력 가산점은 전라북도교육청을 기준으로 학교까지 거리 (km당 0.017점)로 하며, 점수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 학교별 근속경력 가산점 = (거리×0.017점)+1

나. 학교별 근속경력 가산점 조건표

순	학교명	조정거리(km)	연가산점	비고
1	구림초등학교	48	1.816	구림중
2	동계초등학교	50	1.850	
3	복흥초등학교	60	2.02	복흥중
4	순창중앙초등학교	53	1.901	
5	순창초등학교	53	1.901	
6	쌍치초등학교	49	1.833	쌍치중,시산초
7	옥천초등학교	54	1.918	옥천유치원
8	풍산초등학교	58	1.986	
9	순창여자중학교	53	1.901	
10	순창제일고등학교	53	1.901	3식

2. 교육경력 가산점

구 분	점 수
근가 1호 이상	5 점
36 ~ 40호봉	4.5 점
31 ~ 35호봉	4 점
24 ~ 30호봉	3.5 점
18 ~ 23호봉	3 점
12 ~ 17호봉	2.5 점
11호봉 이하	2 점

3. 포상 가산점은 학교별 근속경력 가산점 인정 기간 동안 수상한 것 중 최상위의 포상 하나만 인정한다. 다만, 효행상 수상자는 위 해당 훈격 점수의 1.1배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장, 학장 표창은 당해 총학장 직할학교 재직 시의 것으로 한정한다.

훈 격	점 수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0.75 점
대통령 표창장	0.625 점
국무총리 표창장	0.5 점
장관(장관급 상당의 기관장 포함) 또는 총장 표창장	0.375 점
교육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차관급 상당의 기관장 포함 ) 또는 학장 표창장	0.25 점
교육장 표창장	0.125 점

4. 노부모 봉양교사 가산점은 만 70세 이상의 본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를 2년 이상 직접 봉양하고 있는 교사에게 1점 부여, 단 장애인 부양교사 가산점과의 중복 혜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장애인 부양 가산점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2년(비속은 연한에 관계 없음) 이상 계속 직접 부양하고 있는 교사에게 1점 부여, 단 노부모 봉양교사 가산점과의 중복 혜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자격증 보유 교원(민간자격증은 제외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여 1개 인정한다.)

구분	점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1급, 위생사,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0.75 점
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	0.5 점

#### 7. 학교급식 관리

가. 소속 학교를 포함하여 4교 이상의 공동조리를 담당하는 교사는 월 0.05점을 부여한다.

나. 급식 횟수에 따른 가산점

급식횟수	1일 2식	1일 3식
점수	월 0.1	월 0.2

다. 교육행정기관 파견: 월 0.09점

8. 3자녀 이상(가장 어린 자녀가 만 19세까지 적용)을 둔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때는 1점을 부여한다.

#### 9. 학교규모별 가산점

가. 학교 규모(특수학급을 제외한 학급수, 공동조리교 포함)기준 월단위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여기간은 지역별 연간 근속경력 가산점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점수(월)
22학급 이상	18학급 이상	0.064
13~21학급	9~17학급	0.043
7~12학급	4~8학급	0.021

나. 초·중등학교를 함께 공동조리하는 경우 중등 기준을 적용한다.